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9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 과태료 5억 4,350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)

◦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- 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 등 83명은 2021.4.1.~2024.3.26. 기간 중 ○○○○○○○ ‘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’ 등 61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(초회보험료 57백만원, 수입수수료 418백만원)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794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보험업법」 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제1항 및 제3항

○ 「보험업법」 제209조(과태료) 제7항 제7호